

장수군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내용

1. 제7조(정관의 변경)(시행일: 2024.1.1.)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7조(정관의 변경) ④ 본조합은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, 비상임조합장에서 상임조합장으로 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 재임기간중에는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7조(정관의 변경) ④ 본조합의 조합장 운영체제(상임·비상임)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, 해당 조합장 재임기간중에는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⑤ 본조합의 조합장 선출방식(총회·총회외·대의원회)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전년도 12월까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.</p>

2. 제53조(대의원의 선거등)(시행일: 2024.1.1.)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53조(대의원의 선거등) ⑤ 대의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다.<후단 신설></p>	<p>제53조(대의원의 선거등) ⑤ 대의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1호의 납입출자는 199계좌 이상으로 한다.</p>

3. 제64조(임원의 결격사유)(시행일: 2024.1.1.)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6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(생략)</p> <p>11.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50계좌(조합장의 경우에는 200계좌) 이상의 납입출자(이하 “기준출자”라 한다)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6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(생략)</p> <p>11.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에 대하여 <u>조합장 및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1,000계좌 이상,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500계좌 이상</u>의 납입출자(이하 “기준출자”라 한다)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13.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 실적(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)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. ~ 다. (생략)</p> <p>(비고1) (생략) <신설></p> <p>(비고2) 제13호 각 목의 ()의 금액은 정관 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(예금·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)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.</p>	<p>13.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조합의 사업이용 실적(선거일공고일 현재의 <u>2년</u>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)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(비고1) (현행과 같음)</p> <p>(비고2) 조합에서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, 제13호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(비고3) 제13호 각 목의 ()의 금액은 정관 개정일 현재 제71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<u>2회계연도</u>의 전체 조합원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(예금·적금 및 대출금의 경우에는 평균잔액)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평균이용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합 실정에 따라 정한다.</p>

(비고3) 제1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.

제○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(대의원회) 의결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4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비고4) 제13호의 사업이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.

제○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(대의원회) 의결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4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합정관(예)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 내용

1. 제8조(피선거권의 제한)(시행일: 2024.1.1.)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8조(피선거권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조합의 조합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업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피선거권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조합의 조합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다음 각 목의 기간까지 별표 1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</p> <p>가.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: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전일</p> <p>나. 재선거, 보궐선거, 조합의 설립·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: 선거일공고일 전일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2. 제92조(당선인의 결정)(시행일: 2024.1.1.)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92조(당선인의 결정) ①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</p> <p>②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2조(당선인의 결정) ①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수인 다수득표자로 인하여 당선인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